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3. 1. 19 선고 2021가단13502 판결 [구상금(법인격부인)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수, 이효상

피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전제일 담당변호사 안현준

변 론 종 결 2022. 12. 8.

판 결 선 고 2023. 1.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75,792,302원 및 그 중 362,653,140원에 대하여 2017. 10. 13.부터 2018. 2.

1.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는 B(이하 'B'라 한다)는 2011. 10. 6. 논산시 C을 본점으로, 석제품제조업, 플라스틱 재생원료 제조업, 무역업, 고철 파지수입 판매업,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5. 7. B와 사이에, 원고는 B가 D은행으로부터 부담하게 될 채무 중 신용보증원금 493,000,000원 부분에 대하여 보증기한 2018. 5. 4.까지 신용보증하며, B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및 부대채무 등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약정에 기한 B의 채무를 B의 대표이사인 E이 연대보증하였다.

다. B는 2015. 5. 7. D은행으로부터 58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2017. 7. 4.경부터 그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7. 10. 13. D은행에 503,117,710원을 대위변제하였고(이하 위 대위변제에 따라 원고가 B에 대하여 갖는 구상금을 '이 사건 구상금'이라 한다), 같은 날 B로부터 2,854,478원을 변제받았다.

라. 원고는 2018. 3. 26. "B와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264,014원 그 중 200,263,232원에 대하여 2017. 10. 13.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17차전19362 구상금), 위 지급명령 정본은 B에 2018. 2. 1., E에게 2018. 3. 8. 각 송달되었고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이후 원고는 강제집행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구상금 중 일부를 변제받았고, 이에 따라 원고의 현재 B, E에 대한 채권은 375,792,302원(= 대위변제금 362,653,140원 + 확정손해금 9,237,623원 + 대지급잔액금 3,901,539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362,653,14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7. 10. 13.부터 B는 2018. 2. 1.까지, E은 2018. 3. 8.까지 각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채무를 부담하는 B와 그 대표이사 E이 위 구상금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아들인 F을 대표로 내세워 설립한 회사이고, B와 피고는 그 본점 소재지, 대표 전화번호, 사업목적이 동일하므로, 법인격남용의 법리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구상금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관련법리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게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다른 회사 법인격을 이용하였는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 상태나 자산상황,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정도,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94472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B와 피고의 설립목적이 동일하고, B의 본점과 피고의 본점 주소지, 대표 전화번호가 동일한 점, ② 피고 대표자 사내이사 F은 G의 둘째 아들인 점, ③ B의 과거 거래처와 피고의 거래처가 일부 동일한 점, ④ B의 자산 중 B의 본점 소재지였던 토지와 지상 공장, 공장기계 등을 현재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B와 밀접하게 연관된 회사로서 채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법인격을 남용한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아니하다.

2) 그러나 한편,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가 이 사건 구상금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피고를 설립하였다거나 피고의 법인격을 이용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B의 본점 소재지였던 논산시 C 공장용지 2,697㎡, 위 공장용지 지상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분뇨쓰레기처리시설 1층 480㎡, 1층 210.83㎡, 부속건물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폐기물처리시설 192㎡,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폐기물처리시설(창고) 165㎡¹⁾, H 임야 8,560㎡(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2018. 5. 8.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졌다.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입찰보증금 53,769,200원은 2018. 4. 4. F의 J조합예금계좌((계좌번호 ① 생략), 이하 '이 사건 F J조합계좌'라 한다)에서, 이후 나머지 매각대금 503,230,800원은 2018. 5. 8. 피고의 J조합계좌(개설사무소 K조합, (계좌번호 ② 생략))에서 각 지급되었는데, 피고의 J조합계좌에서 이체된 돈 중 400,000,000원은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432,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주식회사 L으로 대출을 받은 금원으로,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지출한 돈의 상당 부분은 위 대출금이다.

③ 피고가 사용 중인 공장기계는 피고가 2018. 4. 20. B에 47,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계대금 43,000,000원)을 지급하고 매수하였고, B는 위 금원으로 채권자 M에게 2018. 4. 23. 44,000,000원을 지급하여 위 채권자에 대한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④ 원고는, E이 2017. 4. 14. N조합 북부지점에 예금계좌(계좌번호 ③ 생략)를 개설하였고, 그 시점은 B가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대출받은 금원을 연체하기 시작한 2017. 7.로부터 인접하며, B가 위 계좌로 일정한 금원을 입금한 후 그 돈이 대부분 현금으로 2~3일 내에 출금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나, B에서 위 E 계좌로 입금되었던 돈이 피고나 피고 대표자 F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정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입찰보증금이 지급되었던 이 사건 F J조합계좌가 개설된 이후에 B의 주요거래가 위 계좌를 통해 이루어졌고, B, F이 과거 B의 직원이었던 O, P 등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B의 자금을 F, Q(E의 아들이자 피고 대표자의 형제), R(E의 배우자)에게 이전시켰고, 그 자금을

이용하여 피고를 설립한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락받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이 법원의 각 금융거래정

보제출명령 결과, 각 과세정보제공결과만으로는 이러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숙미

1) 위 각 건물의 도로명주소는 논산시 I이다.